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분류표>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 가능 업종 및 품목

대분류	중분류(장르)	소분류	업종 및 품목
문화	도서	도서	도서, 중고도서, 전자책, 만화콘텐츠, 신문 * 쇼핑센터/백화점/마트 내 서점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단말기가 설치된 사업장만 가능
	음악	음악	음반, 음원콘텐츠, 악기(악기부속품)
	영상	영화	영화, 영상콘텐츠(OTT 서비스 등)
		TV	케이블TV, 위성방송
	공연	공연	공연(공연장, 극단, 예술단, 공연기획사, 아트홀)
	미술	전시	전시(미술관, 박물관, 화랑, 비엔날레), 미술품
		공예	공예품, 문구(화방, 문구점), 표구
		사진관	사진촬영, 사진인화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체험(공방, 지자체 문화센터, 공공서비스사이트 등), 온라인취미클래스, 한복대여, VR체험, 드론체험, 방탈출체험, 유·청소년 직업체험 등
	문화일반	문화일반	결제대행사(PG사)
관광	교통수단	철도	철도(KTX, SRT, 무궁화호 등)
		시외/고속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리무진(시외운행)
		국내항공	항공사
		여객선	여객선
		렌터카	렌터카, 전세버스
	여행사	여행사	여행사
	관광지	관광명소	국립공원, 사적지, 시티투어, 케이블카, 모노레일, 기념관, 과학관, 천문대, 동굴, 영화(드라마) 촬영장, 산업관광지
		휴양림/캠핑장	휴양림, 캠핑장, 야영장, 캠핑용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정원 등 동물·식물 주제 관광지
		온천	온천(온천법 허가업소)
		체험관광	지역축제, 템플스테이, 레일바이크, 짚라인, 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지
		테마파크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실내테마파크(키즈카페 등), 민속촌
	숙박	숙박	호텔, 리조트, 콘도, 모텔, 게스트하우스, 민박, 연수원, 수련원
체육	스포츠관람	스포츠관람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입장권 e스포츠 경기 입장권, 국내 개최 국제스포츠경기 입장권, 구단 공식 응원용품
	체육용품	체육용품	체육사 및 체육용품, 자전거, 공유자전거.전동킥보드
	체육시설	체육시설	(종목) 수영, 헬스, 볼링, 요가, 에어로빅, 필라테스, 복싱, 탁구, 당구, 사격, 롤러스케이트, 승마, 스케이트, 스키, 태권도, 합기도, 스포츠댄스, 방송댄스, 레저스포츠 (시설) 체육시설이용 예약플랫폼, 스크린체육시설

※ 매장 내에 식음료·생필품 등 문화누리카드 비허용상품을 일부 구비하고 있는 경우 아래의 번호로 문의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강원문화재단 교육복지팀(033-240-1347,1354)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추가 제출서류>

○ 분야별 공통 제출서류

- 가맹점 등록 신청서 1부
- 가맹점 등록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가맹점 외부 간판사진 1장
- 가맹점 내부 상세사진 2장 이상

○ 분야별 추가 제출서류

업종	추가 제출서류
온천	온천허가증(시·군·구 발급)
숙박업소	모텔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증(시·군·구 발급)
	민박업 민박업 허가필증(시·군·구 발급)
	기타 영업신고증 및 허가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공연	사업자가 주최한 프로그램 이력(최근 2년간) 또는 신규단체의 경우 추진계획 제출 (온라인으로 검색 가능할 경우 검색 내역으로 대체 가능)
문화체험	매장 내·외부 사진(체험장, 가맹점 입구 등)
생활/개량 한복	사업자의 업종분류코드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한복제조업 또는 한복소매업) ※ 사업자 업종분류코드 확인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② MY 홈택스 클릭 ③ 기타 세부정보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클릭 ④ 상세보기 [보기] 클릭하여 주 업종코드 등 확인 ※ 모바일 손택스 이용 시 하단 'my홈택스' > '나의 세무담당'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보기] 터치하여 확인 가능
수공예품점	최근 2년간 제작·판매한 공예품 내역 또는 작업 장소 확인이 가능한 매장 내·외부 사진
복합사업자	매장 내·외부 사진 ※ 매장에서 취급하는 전체 상품(서비스)이 나오도록 여러 장 첨부 (매장 내 허용·비허용 상품(서비스) 구성 비중 등 확인 목적)
지자체관리가맹점	지자체관리가맹점 등록 신청서
지역축제 참여 가맹점	지역축제 참여 가맹점 신청목록(양식) 제출 ※ 단, 축제 기간이 2달(62일) 초과인 경우, 참여 가맹점도 일반 가맹 점과 동일한 신청서류 제출
예술가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키즈카페	유원시설업 허가증 ※ 단, 유원시설 안전정보망 누리집 내 업체정보 확인이 가능할 경우 추가서류 제출 생략 가능

<가맹점 경고·해지·재등록 안내①>

□ 가맹점 경고/해지 기준

○ 등록된 가맹점 중 아래의 사유로 적발될 시 가맹점 경고/해지 가능

- ① 허용되지 않은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
- ② 고의적 결제 거절 또는 문화누리카드라는 이유로 가격을 높게 받는 등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
- ③ 가맹점 홍보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가맹점 해지)
- ④ 부당거래(현금화) 등 지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적발된 경우
- ⑤ 숙박업소 중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 받은 경우(성매매 등)
- ⑥ 담배 취급 또는 판매 사례가 적발된 경우
 - ⑥-1. 가맹점 내에 담배를 취급한 경우
 - ⑥-2. 가맹점에서 담배를 판매(문화누리카드 결제)한 경우
- ⑦ 점검시점 기준, 문화누리카드로 구입이 허용되는 상품(서비스)의 비중이 매장의 대부분(90%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 ⑧ 휴·폐점한 가맹점
- ⑨ 가맹점주가 직접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⑩ 지역문화축제의 축제기간이 종료된 경우(연계 식음료가맹점 포함)
- ⑪ 기타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경고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가맹점 경고/해지 기준 유의사항

- 가맹점 경고 조치는 누적 관리(가맹점 해지 시 소멸되지 않음)
- 해지 기준 ① ~ ③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2회 적발 시 해지
- 지자체관리가맹점의 경우 해지 기준 ① ~ ③의 사유로 1회 적발 시 해지
- 온라인 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허용 품목 판매 및 결제가 적발된 경우 주의 조치 가능
- 가맹점 해지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가맹점의 경고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지역 주관처에서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 점검 일지 및 해지 사유를 정리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공문 발송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경고 또는 해지 여부 결정

<가맹점 경고·해지·재등록 안내②>

□ 해지된 가맹점 재등록 기준

○ 재등록 기준에 부합할 경우 가맹점 등록 절차에 따라 재등록 가능

※ 가맹점 재등록 기준

- 해지 기준 중 ① ~ ⑤의 사유로 해지된 가맹점의 경우
 - 해지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등록 가능
- 해지 기준 중 ⑥ 담배 취급 또는 판매(결제)한 경우 재등록 기준
 - ⑥-1. 담배 취급한 경우 재정비(담배 미취급) 후 즉시 재등록 가능
 - ⑥-2. 담배 판매(문화누리카드 결제)한 경우 해지 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 후 재등록 가능
- 해지 기준 중 ⑦의 사유로 해지된 가맹점의 경우 재정비 후 재등록 가능
 - 문화누리카드 구입 허용 상품(서비스) 비중을 대부분(90% 이상)으로 확대

※ 가맹점 해지기준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가맹점(해지기준 중 ① ~ ⑦의 사유로 해지된 가맹점)의 경우 2020년 12월 개정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의 본 조항이 소급적용되어 2020년 12월 이전에 해지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도 해당 재등록 기준(2년경과 후 재등록 가능)이 적용됨

○ 가맹점 재등록 기준 유의사항

- 재등록 가맹점이 가맹점 해지 기준 중 ① ~ ⑦의 사유로 재적발 될 시에는 2년 경과 후에도 재등록 불가
 - ⑪ 기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지 결정시 재등록 불가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 관리가맹점 중 해지기준 ① ~ ⑦의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재등록 불가
 - 해지된 가맹점이 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상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결정 하에** 2년 이내에 재등록 가능
- ※ 지역주관처에서 인정 시 재등록 사유를 정리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공문 발송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재등록 여부 결정